

세계연맹 경기규칙 개정내용

경기규칙 구분	개 정 내 용	비 고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핑 : 선수 보호 차원에서 손과 발 부분에 붕대를 감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동일 부위를 3 회 이상 감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검사대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의료적 소견에 의해 3회 이상 붕대를 감아야 하는 경우, 의무분과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도복과 경기용품
금지행위와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가 “경고” 10 회 또는 “감점” 5 회을 받거나 “경고”와 “감점”을 합쳐 상대방의 얻은 점수가 총 5 점이 되면 심판은 벌칙으로 그 선수를 패자로 선언한다. · 넘어진 행위 벌칙 중 “주의” 없음 · 전자보호구나 발보호대 센스 조작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대 또는 경기장에서 심판이나 경기임원이 선수나 코치가 전자 채점보호구를 조작하여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는 그 선수를 실격시킨다. - 주심은 상대 선수가 전자 채점 보호구를 조작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반칙승을 선언한다. - 사후 징계 조치한다. · 금지행위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넘어지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경고를 부여한다. 상대의 반칙 행위로 인하여 넘어졌을 경우에는 경고 처리하지 않고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만 벌칙을 부여한다. 반칙 행위가 아닌 행위에 의해 넘어졌을 경우 넘어진 선수에게는 경고를 부여한다. 단 서로 몸이 부딪혀 넘어진 경우는 경고를 부여하지 않는다. 	

구 분	개 정 내 용	비 고
금지행위와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 중에 혼자 넘어지거나 맞고 넘어지면 경고 부여하며, 단 맞고 넘어진 경우 계수가 시작되면 경고 부여를 하지 않는다. → 발끼리 부딪혀 양 선수가 모두 넘어진 경우에는 두 선수 모두 “경고” 선언한다. - 선수가 경기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가 보호장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심에게 경기의 중단을 요청하면 주심은 공격 수신호 (Fight)를 하며, 다시 한번 더 요청하면 경고 부여한다. → 몸을 허리 이하로 숙여서 피하거나 웅크려서 피하는 행위 - 유효한 공격을 막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릎을 들어올리는 행위 또는 공격 동작을 하지 않고 상대의 공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리를 들고 있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가 다리를 앞뒤로 3초 이상 들고 있으면 주심은 경고 선언. 단, 들고 있다가 3초안에 내렸다 다시 들고 있는 행위는 가능 - 손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주먹) 또는 팔, 팔목이나 팔꿈치 등으로 상대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가격 당한 선수가 부주의에 의하여 가격 당한 경우, 즉 지나치게 숙이거나 주의 없이 몸을 돌리는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가격한 경우는 제외된다. -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의 양 발이 한계선을 넘을 때 경고가 선언된다. 선수가 상대 선수의 금지 행위로 인해 한계선을 넘으면 “경고”는 선언되지 않으며, 상대선수에게 “경고”를 부여한다. 	

구 분	개 정 내 용	비 고
금지행위와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행위 -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심의 갈려 선언 이후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분석의 경우, 갈려 선언의 시작 기준은 주심의 갈려 수신호의 팔이 완전히 퍼진 순간으로 한다. 공격동작의 시작 기준은 발이 바닥을 완전히 떠난 순간으로 한다. 퍼진 순간 공격시 감점 선언 - 정상적인 기술교환을 회피하며 도망가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 정상적 공방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계선을 반복적으로 벗어나거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감점을 선언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 돌리고 고의적으로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감점 선언한다 · 얼굴을 손, 주먹, 팔꿈치 등으로 가격시 심각성과 의도를 주심이 판단하여 경고 또는 감점 처리 · 행위가 몹시 부당하거나 또는 행위 자체가 심하게 행해질 때는 감점 선언을, 부당성이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할 때는 경고 선언을 한다. 그러나 경미한 행위 일지라도 경고 선언 후 재차 범할 때는 감점 선언을 할 수 있다. 	
골든포인트와 우세의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든데스 → 골든 포인트 회전으로 변경 · 4회전에서 양 선수가 동시에 경고, 감점으로 인하여 -1점으로 1:1인 경우 주심은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 골든포인트 회전 우세판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회전(제4회전) 동안 전자 채점보호구에 기록된 유효타의 횟수가 많은 선수 - 유효타가 동수일 때는 1회전부터 4회전까지 누적된 경고와 감점(=경고 2회)의 합이 적은 선수 	

구 분	개 정 내 용	비 고
골든포인트와 우세의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두 가지 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 주심과 부심이 연장회전(제4회전)의 경기 내용을 평가하여 우세승을 결정한다. 주심과 부심의 우세 판정이 동수를 이루었을 때는 주심이 우세승을 결정한다. 	
경기결과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심직권승(RSC) - 선수가 득점 기술에 의하여 쓰러져 주심이 “여덟”까지 계수할 때에도 경기 속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수의 진행에 상관없이 주심이 경기 속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때 (기존 KO승 선언) - 주심이 선수의 통증이 타박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로 판단했을 때는 “갈려” 선언으로 경기를 중단시키고, 경기속행 지시(“stand-up”)를 한다. 선수가 주심의 세 차례의 경기속행 지시에도 경기 속행에 임하지 않을 때는 상대 선수에게 주심직권승을 선언한다. 	
비디오 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가 코치에게 영상판독 신청 동작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경고를 부여하지 않는다. · 영상 판독결과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구분하며, 영상판독 기각시 경고 부여하지 않음 · 전자호구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발 또는 주먹에 의한 몸통 득점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은 수용되지 않음 · 영상 미촬영시 영상판독카드는 돌려주고 계속 진행되고, 미확실한 판단 또는 화면상태가 안좋을 경우 부심의 의견을 존중 	

구 분	개 정 내 용	비 고
비디오 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판독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대회 소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결과 처리의 착오: 점수 계산의 착오나 청, 흥 선수의 착각에 의한 경우는 그 결과를 번복한다. - 규칙적용의 착오: 주심이 규칙 적용을 명백히 착오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번복하고 주심을 징계한다. 	
그 외 상황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기술된 내용 이외의 상황에 대한 처리는 개정된 세계연맹 경기규칙에 따른다. 	